44 건설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알레르기반응

성별	남성	나이	35세	직종	건설업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 요

○○○은 25세경부터 건설회사에서 근무해왔으며, 2013년 7월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전 업무와 유사한 하수관거 매립, 맨홀설치 등의 업무를 시행하여왔다.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5년 4-7월 '□파크'의 하수관 교체 현장에 파견되었으며, 원근무지와 병행하여 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이후 8월부터 다시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였으나 8월경부터 기침이 너무 심해져 8월 1개월간 □내과의원에서 간헐적으로 외래 치료 받았으며, 치료 중에 벚꽃 유원지 인근, 풀과 나무가 많은 현장에서 근무하던 8월 29일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 등으로 쓰러져 평소 다니던 □내과의원 내원하였으나 증상 위중하여 응급실 전원하였고, 귀가 후 8월 31일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하수관거 매립 관련 근무하는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 먼지, 풀, 오물 등에 노출 되었으며, 특히 2015년 파견 근무시에 잔디에 노출이 심하게 되면서 현재의 알레르기 반응이 발병 및 악화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근로자의 상병과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사병으로 군대를 제대하였으며, 25세경부터 건설회사에서 최근까지 □사업 장에서 수행해온 업무와 유사한 하수관거 매립, 맨홀설치 등의 업무를 시행하여왔다.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업무는 작업현장에서 매립된 하수구가 드러나면 기존의 관을 제거하거나, 교체하고 매립지를 복구하는 업무였다.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7월경까지 '□파크'의 하수관 교체 현장에 파견되어 하수관 교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곳은 하수관이 한지형 잔디로 조성된 곳에 매립되어있어 매립지 주변의 잔디밭을 블록 형태로 절단하여 제거하고 매립관 교체를 진행한 후에 잔디밭을 복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평소주로 매립관 교체를 시행하는 일반 도로 및 주거지 인근에서 업무할 때에 비하여 잔디와 관련 부속물들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3 해부학적 분류

- 면역계질환

4 유해인자

- 화학적요인(분진)

5 의학적 소견

특이적인 과거력은 없다. 2015년 8월 호흡기 질환 관련하여 5차례 내과의원 내원하였다. 8월 29일 토요일 근무 중 호흡곤란과 가려움 등으로 □내과의원 경유하여 8월 29일 오전 10~11시경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이후 □대 학병원 전원되어 치료 받던 중, 타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현재까지 진료 중이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개 고양이 만지면 기침을 하고 상하수도 공사에 일을 하고 있으며 측량일을 하던 중에 현재 증상이 발행하였으며, 현장에서 더 힘이 든다고 진술한 바가 차트에 기입되었다. 또한 청진상 wheezing이 관찰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알레르기면역치료 및 Omalizumab inj.을 통해 새로운 감작을 예방하고자 하나, 아직 total IgE 1900kU/L이상으로 상승 소견보이며, 곡류 섭취 시 피부가려움증 및 부종이지속되며 외부 활동시에도 자극 증상을 느끼는 등, 증상들이 남아 있어서 예후에 대하여 장기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10여 년간 하수관거 매립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그 간 하수, 오물, 슬러지, 잔디 입자 등 다양한 물질에 노출되었다. 파견지역은 한지형 잔디 아래 하수관이 매립되어 있어 매립지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잔디 입자 등에 노출되었을 것이고, 잔디 업무를 시행한 시기(2015년 4월~7월)와 증상이 발생한 시기(2015년 8월) 사이에 감작으로 인한 증상 발현의 선후관계가 성립된다. 근로자는 과거에 특별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이력이 없었으며, 근무 중에 지속적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했다고볼 개연성이 있으며, 이 당시에 상승한 IgE 수치가 회복되지 않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치료를 하고 있으나 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자의 상세불명의 알레르기 질환 및 아나필락시스는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끝.